

#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포항시장(2024. 07. 17.)

나. 회부일자 : 2024년 07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4. 07. 30)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 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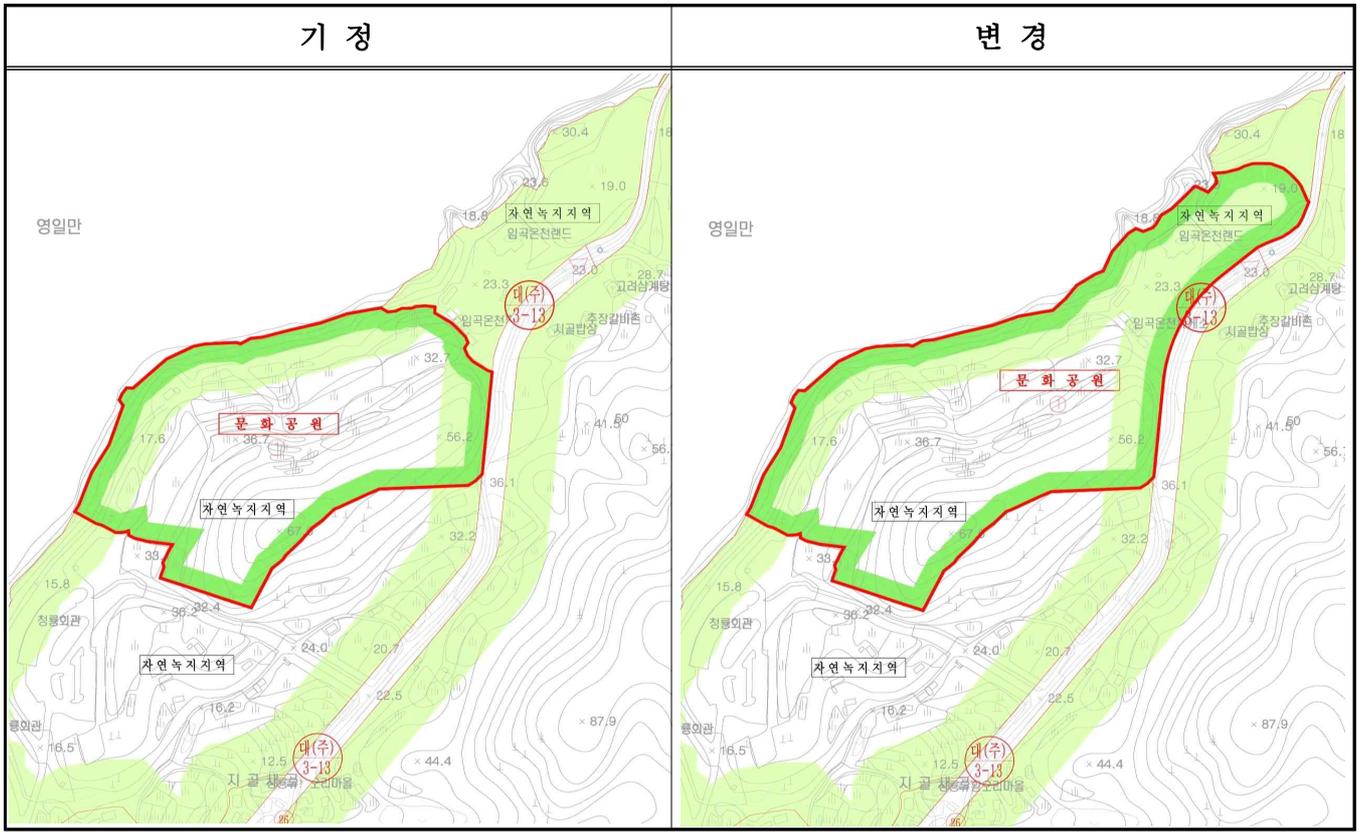
①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 설 의 분 세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연오랑 세오녀 문화공원	문화 공원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번지 일원	82,637	증) 22,819	105,456	포항시 고시 제2011-119호 (2011.12.23)

②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오랑 세오녀 문화공원	· 면적변경 - A : 82,637m <sup>2</sup> → 105,456m <sup>2</sup> 증) 22,819m <sup>2</sup>	·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원의 편의성 증진 및 녹지 제공을 위하여 연오랑 세오녀 문화공원 확장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도



3.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본 안건은 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공원시설 면적을 82,637㎡에서 105,456㎡로 22,819㎡ 확장 변경 지정함으로써, 공원시설 확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방문객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해파랑길과 연계한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을 견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영일만대교 건설과 연계 시 지역이 향유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균형 있게 검토하고, 해안경관이 수려한 위치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만큼 향후 주차장 조성과 추가적인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하고, 또한, 임곡리 313번지 일원에 대한 공원구역 편입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6. 토론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의견서 별첨)

#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공원시설 면적을 82,637㎡에서 105,456㎡로 22,819㎡를 확장 변경 지정함으로써,
- 공원시설 확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방문객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해파랑길과 연계한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을 견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영일만 대교 건설과 연계 시 지역이 향유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균형 있게 검토하고, 해안경관이 수려한 위치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만큼 향후 주차장 조성과 추가적인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하고, 또한, 임곡리 313번지 일원에 대한 공원구역 편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2024년 07 월 30 일

포항시의회